

□ 病院稅務相談 □

상담 : 柳 泰 玎 (公認会計士·대양회계법인)

[質疑] 相続에 따른 法律의 留意事項과 共同相繼에 따른 課稅处分內容을 說明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인천직할시 H 病院>

[問 1] 民法上 包括的遺贈이란 무엇인지요?

[問 2] 相繼의 開始意味는 어떠한지요?

[問 3] 財產相繼人과 財產相繼의 順位는?

[問 4] 法定相繼分의 按分比率의 内容은?

[問 5] 指定相繼分과 遺留分制度란 무엇인지요?

[問 6] 相繼의 單純承認, 限定承認, 拋棄란?

[問 7] 相繼開始日로 부터 3個月內에 相繼拋棄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共同相繼인이 協議分割함으로써 相繼人中 자기의 法定相繼分을 超過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한 경우의 課稅处分은?

[答 1] 民法 第1005條 本文은『재산상속인은 相繼開始된 때로부터 被相繼人(사망자)의 재산에 대해 包括的 權利義務를 承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즉 순전한 財產上의 權利의무뿐만 아니라 被相繼人의 신분을 전제로한 財產上의 權利義務도 承繼 하는 것이므로 被相繼人이 은행에 대한 債債務을 부담하고 있었을 경우에는 積極的財產 有無에 관계없이 그의 消極財產(債務)이 相繼人에게 상속되므로 銀行等 채권자를 그 財產相繼人에게 債務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3) 또한 死亡者가 유언으로써 특정인에게 包括的 遺贈을 한 경우는 그 包括受贈者가 그 債債務도 承繼하나 特定受贈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答 2] 1) 民法 997條는 相繼을 死亡에 의해開始됨을 定하고 있으므로 自然的死亡時는 현실로 사

망한 때이고 사망신고를 한 때가 아닙니다.

2) 判例에 의하면 相繼開始음을 안 날로 부터라는 意味는, 상속인이 「사망사실」만 알고 法律不知로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는 相繼開始하는 것을 알았다고 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으며, 遠距離에 있는 상속인은 전보等으로 被相繼人の 死亡事實을 안 때, 失踪宣告에 의하여 사망으로 보는 때는 失踪宣告確定時가 아니라 失踪宣告期間이 滿了한 때입니다.

[答 3] 法律上 相繼人이 되는 資格者와 그 順位는 다음과 같으며 이때 胎兒는 이미 出生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1) 第1順位 : 被相繼人の 直系卑属과 妻
- (2) 第2順位 : 被相繼人の 直系尊属과 妻
- (3) 第3順位 : 被相繼人の 弟兄姊妹
- (4) 第4順位 : 被相繼人の 8寸以内의 傍系血族
- (5) 相繼人이 없을 때는 國家에 归屬한다.

[答 4] 改正民法(1979. 1. 1 시행)은 재산상속등에 있어서 男女의 差別를 대폭 완화하였습니다.

即, 長男 : 1.5, 妻 : 1.5, 長男以外의 아들 : 1, 딸 : 1, 出嫁한 딸 : 0.25의 比重值로 相繼分을 갖게 됨.

改正民法上의 法定相繼分의 비율의 實例를 들어 図示하면 다음 表와 같습니다.

[答 5] 1) 「指定相繼分」이라 함은 共同相繼에 있어서 피상속인의 遺言에 의한 指定으로 정하여지는 상속분으로 法定相繼分에 우선합니다.

2) 改正前 民法은 遺言自由의 原則을 채택하여 全財產을 유언으로 처분할 수 있게 함으로써 生活能力이 없거나, 財產形成에 함께 참여한 가족의 입장에서는 不合理한 점이 있었습니다.

改正民法의 法定相続分比率表

(戸主(父)가 死亡한 경우)
(의 第1順位 相続関係)

被相続人	第1順位法定相続人の 法定相続分과 그 비율			
	長男	妻		
(1) 戸主(父)	1.5 - (3) $\frac{1}{2}$	1.5 - (3) $\frac{1}{2}$		
(2) 戸主(父)	長男	長女	妻	
	1.5 - (3) $\frac{3}{8}$	1 - (2) $\frac{2}{8}$	1.5 - (3) $\frac{3}{8}$	
(3) 戸主(父)	長男	長女(出嫁)	2男	妻
	1.5 - (6) $\frac{6}{17}$	0.25 - (1) $\frac{1}{17}$	1 - (4) $\frac{4}{17}$	1.5 - (6) $\frac{6}{17}$
(4) 戸主(父)	長男	長女(出嫁)	2男	2女
	1.5 - (6) $\frac{6}{21}$	0.25 - (1) $\frac{1}{21}$	1 - (4) $\frac{4}{21}$	1 - (4) $\frac{4}{21}$
(5) 戸主(父)	長男	2男	3男	長女
	1.5 - (3) $\frac{3}{9}$	1 - (2) $\frac{2}{9}$	1 - (2) $\frac{2}{9}$	1 - (2) $\frac{2}{9}$

따라서 「遺留分制度」를 두어 「배우자와 자녀」에게는 法定相続分의 2分의 1, 직계존속과 형제자매에게는 法定相続分의 3分의 1을 유언과 관계없이 相続할 수 있게한 制度입니다.

[答6] 1) 相続에 의한 権利義務의 承繼는 당연히 발생하나, 相続人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때로 부터 3月内에 「單純承認」 「限定承認」 「拋棄」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2) ① 單純承認 :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無制限으로 承繼할 것으로 승인하는 상속인의 意思表示이며,

② 限定承認 : 상속받은 財產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것을 留保하고 상속을 승인하는 相續人の 의사표시입니다.

③ 拋棄 : 상속의 效果를 확정적으로 거부하는 의사표시입니다. (相繼拋棄書式 : 별지참조) 그러므로 財產相續인이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 승인을 하려면 相繼開始 있음을 안 때로 부터 3個月内에 家庭法院에 상속포기의 신고 또는 限定承認의 申告를 해야합니다.

[答7] [財產1264-1281. 1984. 12. 3]의 회시 내용은 다음내용과 같이 과세처분하고 있습니다.

〈回示〉

現行民法 제10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財產相續人은 相繼開始 있음을 안날로부터 3월내에

포기를 할 수 있으며, 同法 제1041조의 규정에 의하여 財產相續人이 相繼을 포기할 때에는 同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3월)내에 法院에 포기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이 財產相續인이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하고 共同相續人이 相繼財產을 民法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하여 協議分割함에 있어 相續人중 자기의 法定相繼持分을 초과하여 相繼財產을 取得한 경우에는 이를 贈與로 보아 贈與稅가 課稅되는 것임.

財產相續人 相繼拋棄申告書

財產相續人相繼拋棄申告書

印紙

本籍

住所

申告人 × ○ ○

西紀 年 月 日生

本籍

最後住所

被相繼人 A ○ ○

西紀 年 月 日生

1. 申告人은 被相繼人 A ○ ○의 次男입니다.

2. 申告人은 被相繼人이 西紀 年 月 日死亡하였으므로 申告人에게 相繼의 開始가 있음을 즉시 알았으나 申告人은 다른 相繼人과는 달리 相繼人으로부터 최고 학부까지의 教育費를 받아 大學을 卒業하였고 申告인이 結婚할 때에는 집 한 채를 새로 지어 받았으므로 相繼을 拋棄하고 申告인의 相繼分을 다른 相繼人에게 相繼시키고자 하여 이에 申告하는 바입니다.

添付書類

1. 戶籍謄本 1通

2. 除籍謄本 1通

3. 納付書 1通

西紀 年 月 日

위申告人 × ○ ○ ㊞

○○家庭法院 貴中

*